

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농가, 추가 이행기간 부여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

- ◎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,
- ◎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.

〈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(18.3월) 〉

-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
- 추가 이행기간은 기 부여 받은 이행기간(~'19.9.27) 동안 농가의 적법화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이행에 실제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

■ 주요내용

- ◎ **(현황)** 8월 15일 기준,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.5%, 진행 49.4% 등 **88.9%**
- 이행기간 종료 1개월 앞두고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 크게 증가
- ◎ **(추가 이행기간)** 적법화 진행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(9.27)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
- **(대상)** 측량 완료 후,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, 이행강제금

납부,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

* 제외대상 :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,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

- (기간 부여)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
- (관리방안)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 → 관계부처·공공기관 T/F에 점검결과 보고(매월)

◎ (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) 적법화 이행기간(9.27 종료)까지 적용되는 제도개선 과제(31건)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 연장

▣ 적법화 추진을 현황

◎ 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,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(39.5%)와 진행(49.4%)을 합해 88.9%이며,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.1%로 집계되었다.

| 구분 | 전체 (관리농가) | 적법화 추진 (88.9%) | | | | | | | 미진행 (11.1%)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|
| | | 완료 | | | 진행 | | | | | | | |
| | | 인허가 | 폐업 | 소계 | 설계 도면 작성 | 이행 강제금 납부 | 인허가 접수 | 소계 | 측량 | 관망 | 폐업 예정 | 소계 |
| 개소 | 31,789 | 11,101 | 1,447 | 12,548 | 10,360 | 1,654 | 3,699 | 15,713 | 1,618 | 870 | 1,040 | 3,528 |
| 비율(%) | 100.0 | 34.9 | 4.6 | 39.5 | 32.6 | 5.2 | 11.6 | 49.4 | 5.1 | 2.7 | 3.3 | 11.1 |

◎ 미진행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,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추진율(완료+진행) : ('18.11) 40.4% → ('19.3) 56.1 → ('19.5) 77.4 → ('19.8) 88.9

* 미진행율 : ('18.11) 59.6% → ('19.3) 43.9 → ('19.5) 22.6 → ('19.8) 11.1

■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

◎ **[기본방향]** 일률적인 연장은 불가,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

첫째,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,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하여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

-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,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이다.
- 아직,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,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.
-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,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.

둘째,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

-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.

셋째,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

-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관계부처·공공기관 T/F에 보고해야 한다.
- 관계부처·공공기관 T/F에서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.

* 관계부처·공공기관 T/F : 관계부처(국무조정실, 농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), 공공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대한건축사협회, 농협, 축산환경관리원)으로 구성

참고

적법화 추진 현황(8월15일 기준)

| 구분 | 관리 농가 | 완료 | | | 진행 | | | | 측량 | 미진행 | | | 진행률 | |
|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인허가 | 폐업 | 소계 | 실계 도면 작성 | 이행 강제금 납부 | 인허가 접수 | 소계 | | 관망 | 폐업 예정 | 소계 | | |
| 전국 | 소계 | 31,789 | 11,101 | 1,447 | 12,548 | 10,360 | 1,654 | 3,699 | 15,713 | 1,618 | 870 | 1,040 | 1,910 | 88.9 |
| | 비율 | 100.0 | 34.9 | 4.6 | 39.5 | 32.6 | 5.2 | 11.6 | 49.4 | 5.1 | 2.7 | 3.3 | 6.0 | |
| 부산 | 소계 | 3 | 0 | 0 | 0 | 3 | 0 | 0 | 3 | 0 | 0 | 0 | 0 | 100.0 |
| | 비율 | 100.0 | 0.0 | 0.0 | 0.0 | 100.0 | 0.0 | 0.0 | 100.0 | 0.0 | 0.0 | 0.0 | 0.0 | |
| 대구 | 소계 | 57 | 6 | 2 | 8 | 27 | 0 | 7 | 34 | 5 | 1 | 9 | 10 | 73.7 |
| | 비율 | 100.0 | 10.5 | 3.5 | 14.0 | 47.4 | 0.0 | 12.3 | 59.6 | 8.8 | 1.8 | 15.8 | 17.5 | |
| 인천 | 소계 | 149 | 75 | 2 | 77 | 17 | 0 | 3 | 20 | 8 | 32 | 12 | 44 | 65.1 |
| | 비율 | 100.0 | 50.3 | 1.3 | 51.7 | 11.4 | 0.0 | 2.0 | 13.4 | 5.4 | 21.5 | 8.1 | 29.5 | |
| 광주 | 소계 | 12 | 4 | 1 | 5 | 0 | 0 | 3 | 3 | 0 | 3 | 1 | 4 | 66.7 |
| | 비율 | 100.0 | 33.3 | 8.3 | 41.7 | 0.0 | 0.0 | 25.0 | 25.0 | 0.0 | 25.0 | 8.3 | 33.3 | |
| 대전 | 소계 | 52 | 7 | 11 | 18 | 14 | 8 | 2 | 24 | 1 | 4 | 5 | 9 | 80.8 |
| | 비율 | 100.0 | 13.5 | 21.2 | 34.6 | 26.9 | 15.4 | 3.8 | 46.2 | 1.9 | 7.7 | 9.6 | 17.3 | |
| 울산 | 소계 | 527 | 159 | 5 | 164 | 267 | 0 | 42 | 309 | 32 | 22 | 0 | 22 | 89.8 |
| | 비율 | 100.0 | 30.2 | 0.9 | 31.1 | 50.7 | 0.0 | 8.0 | 58.6 | 6.1 | 4.2 | 0.0 | 4.2 | |
| 세종 | 소계 | 134 | 68 | 1 | 69 | 28 | 2 | 2 | 32 | 0 | 7 | 26 | 33 | 75.4 |
| | 비율 | 100.0 | 50.7 | 0.7 | 51.5 | 20.9 | 1.5 | 1.5 | 23.9 | 0.0 | 5.2 | 19.4 | 24.6 | |
| 경기 | 소계 | 3,823 | 1,078 | 145 | 1,223 | 935 | 246 | 696 | 1,877 | 235 | 354 | 134 | 488 | 81.1 |
| | 비율 | 100.0 | 28.2 | 3.8 | 32.0 | 24.5 | 6.4 | 18.2 | 49.1 | 6.1 | 9.3 | 3.5 | 12.8 | |
| 강원 | 소계 | 1,029 | 418 | 95 | 513 | 279 | 11 | 92 | 382 | 72 | 24 | 38 | 62 | 87.0 |
| | 비율 | 100.0 | 40.6 | 9.2 | 49.9 | 27.1 | 1.1 | 8.9 | 37.1 | 7.0 | 2.3 | 3.7 | 6.0 | |
| 충북 | 소계 | 2,249 | 997 | 90 | 1,087 | 592 | 81 | 290 | 963 | 100 | 40 | 59 | 99 | 91.2 |
| | 비율 | 100.0 | 44.3 | 4.0 | 48.3 | 26.3 | 3.6 | 12.9 | 42.8 | 4.4 | 1.8 | 2.6 | 4.4 | |
| 충남 | 소계 | 4,583 | 1,734 | 155 | 1,889 | 1,642 | 158 | 472 | 2,272 | 195 | 68 | 159 | 227 | 90.8 |
| | 비율 | 100.0 | 37.8 | 3.4 | 41.2 | 35.8 | 3.4 | 10.3 | 49.6 | 4.3 | 1.5 | 3.5 | 5.0 | |
| 전북 | 소계 | 4,133 | 1,299 | 312 | 1,611 | 1,234 | 166 | 504 | 1,904 | 225 | 123 | 270 | 393 | 85.0 |
| | 비율 | 100.0 | 31.4 | 7.5 | 39.0 | 29.9 | 4.0 | 12.2 | 46.1 | 5.4 | 3.0 | 6.5 | 9.5 | |
| 전남 | 소계 | 4,693 | 1,703 | 298 | 2,001 | 1,537 | 421 | 518 | 2,476 | 47 | 9 | 160 | 169 | 95.4 |
| | 비율 | 100.0 | 36.3 | 6.3 | 42.6 | 32.8 | 9.0 | 11.0 | 52.8 | 1.0 | 0.2 | 3.4 | 3.6 | |
| 경북 | 소계 | 7,273 | 2,702 | 210 | 2,912 | 2,490 | 465 | 644 | 3,599 | 506 | 146 | 110 | 256 | 89.5 |
| | 비율 | 100.0 | 37.2 | 2.9 | 40.0 | 34.2 | 6.4 | 8.9 | 49.5 | 7.0 | 2.0 | 1.5 | 3.5 | |
| 경남 | 소계 | 2,856 | 793 | 109 | 902 | 1,228 | 96 | 392 | 1,716 | 177 | 28 | 33 | 61 | 91.7 |
| | 비율 | 100.0 | 27.8 | 3.8 | 31.6 | 43.0 | 3.4 | 13.7 | 60.1 | 6.2 | 1.0 | 1.2 | 2.1 | |
| 제주 | 소계 | 216 | 58 | 11 | 69 | 67 | 0 | 32 | 99 | 15 | 9 | 24 | 33 | 77.8 |
| | 비율 | 100.0 | 26.9 | 5.1 | 31.9 | 31.0 | 0.0 | 14.8 | 45.8 | 6.9 | 4.2 | 11.1 | 15.3 | |